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0-049

제출년월일 : 2010. 8. .

제출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개정이유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 등으로 하나의 아파트단지 내에 2개의 법정동이 존치하게 되어 주민의 생활권과 경제권이 불일치함으로써 주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하고 행정기관의 행정능률을 저해하고 있어 이를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변경하여 주민편익을 도모하고 행정능률을 향상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서강주택재건축정비사업 준공에 따른 신정동 153번지, 신정동 153의1번지, 신정동 153의2번지를 하중동에 편입함(개정연혁표 6)

3. 개정근거

가. 「지방자치법」 제4조의2

나.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의2

4. 개정조례 안 : 따로붙임

5.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6. 기타사항

가. 입법예고 : 2010. 8. 5 ~ 8. 24(제출된 의견 없음)

나.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의결(2010. 8. 26)

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연혁표6)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개정연혁표6)

신정동 153번지, 신정동 153의1번지, 신정동 153의2번지를 하중동에 편입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 설></u>	(개정연혁표6) <u>신정동 153번지, 신정동 153의1번지, 신정동 153의2번지를 하중동에 편입한다.</u>